

[별표 2]

소방용품 공정심사 기준

1. 품질제품검사(I)<신설 2026. 4. 13.>

구 분		심사 종류	심 사 기 준	평 가 결 과		
				적합	부적합	비 고
[1] 품질경영관리	가) 품질 경영 시스템	(중)	1.1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한 품질문서(매뉴 등)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1.2 품질문서는 규정된 배포대상자에게 항상 최신본으로 배포 및 관리되어야 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1.3 품질제품검사 신청 업체에서 운영 중인 품질관리시스템은 품질제품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전에 구축되어야 한다.			
		(중)	1.4 품질제품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품목단위별 생산제품검사의 최근 1년간 불합격율(검사요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3.0 % 이하이어야 한다. ※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 변경을 신청한 경우, 품질제품검사 신청일은 종전의 품질제품검사의 신청일로 한다.			
	나) 기록 및 문 서관리		1.5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규격 등 모든 기술문서는 최신본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에 따라 생성되는 모든 기록(자체검사관련서류, 합격표시 관련서류 등)은 3년 이상의 보존기간을 설정하여 관리대장에 의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구매 및 생산	가) 외주 업체 관리	(중)	2.1 품목단위의 제품에는 수입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나) 제조설 비 및 장 비	(중)	2.2 신청품목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 및 장비를 보유하고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 생산	(중)	2.3 생산공정 합리화를 위한 최신본의 공정관리규정(작업지침서, 작업표준, 작업지도서 등) 및 공정별 합격 판정기준을 규정화하여야 한다.			
			2.4 생산설비, 생산품 및 불량품에 대한 식별표시를 명확히 하고 정상제품과 불량제품을 격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중)	2.5 완성품의 생산 및 판매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록은 합격증지 불출현황			

			또는 철인사용 현황 기록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자체 검사 체계	가) 검사 방법 및 합 격 수 준 관 리	(중)	3.1 샘플링·검사방법 및 합격수준 등을 규정화하고 자체품질검사시스템을 통해 시험·검사결과 등 증거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중) (*)	3.2 합격제품의 출고를 승인하는 책임자를 선정하여 승인이 확인된 경우에 제품을 출고하여야 한다.			
			3.3 시험·검사제품의 취급·운반·보관 및 부적합·불량제품에 대하여 원인과약 등 처리절차를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중)	3.4 시험·검사자를 지정하여 생산로트마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중)	3.5 형식별로 년 1회 이상 관련 기준의 시험방법에 따라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6 시험실별 환경유지를 위한 온도 및 습도 조건을 규정화 하고 시험실 환경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나) 검사 설 비 및 장 비	(중)	3.7 교정 등을 통해 측정의 유효성과 지속적인 장비의 가동·유지·관리상태가 확인되어야 한다.			
			3.8 주요 시험·검사장비의 사용매뉴얼 등 사용기준을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	3.9 기기의 구입, 사용, 점검, 수리, 폐기 등 관리절차를 규정화하고 기기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4] 품질 개선 활동	가) 시정 및 예 방 조 치		4.1 생산공정 및 검사결과와 불량원인 개선을 위한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를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5] 합 격 표 시	가) 합격 표시	(중)	5.1 합격표시의 관리(수령, 불출, 사용, 보관 및 반납, 오사용, 훼손, 도난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화하고, 대표자가 지정된 직원에 의해 관련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록에서 관리책임자의 서명이 확인되어야 한다.			

등의 관리			5.2 합격표시 관리자는 합격표시 부착작업 공정에 입회하여야 하며, 주 1회 이상 합격표시 관리상태를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	5.3 합격표시는 분실 및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2중의 시건장치가 된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외의 불출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나) 품질 안정성	(중)	5.4 생산중 제품의 결함 또는 A/S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치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되어 품질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 (중)표시의 심사항목은 심사결과 1개 이상의 부적합 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결과는 부적합 처리됨.

※ (*)표시의 심사항목은 이미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신청인이 다른 품목단위의 소비용품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는 심사항목임.

2. 품질제품검사(Ⅱ), 품질제품검사(Ⅲ)<개정 2026. 4. 13.>

구 분		심사 종류	심 사 기 준	평 가 결 과		
				적합	부적합	비 고
[1] 품 질 경 영 관 리	가) 품질 경 영 시 스템	공통 (*)	1.1 대표자의 품질경영 의지를 나타내는 “품질방침” 및 년도별 세부 실행계획인 “품질목표”를 수립하고 작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통 (중)	1.2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한 품질문서(매뉴얼, 절차서 및 작업표준 또는 작업지침서 등)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공통	1.3 품질경영시스템의 유효성 보장 및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품질문서 제·개정 등 개선을 실시하고 책임자가 승인한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통	1.4 품질문서는 규정된 배포대상자에게 항상 최신본으로 배포 및 관리되어야 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통	1.5 인력 및 제조설비 등 품질경영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문서화된 변경절차를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통 (*)	1.6 품질제품검사 신청 업체에서 운영 중인 품질관리시스템은 품질제품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전에 구축되어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Ⅱ) (중)	1.7 품질제품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품목단위별 생산제품검사의 최근 1년간 불합격율(검사로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2.0 % 이하이어야 한다. ※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 변경을 신청한 경우, 품질제품검사 신청일은 종전의 품질제품검사의 신청일로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Ⅲ) (중)	1.8 품질제품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품목단위별 생산제품검사의 최근 1년간 불합격율(검사로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 % 이하이어야 한다. ※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 변경을 신청한 경우, 품질제품검사 신청일은 종전의 품질제품검사의 신청일로 한다.			
	나) 조직	공통	1.9 품질관리 및 생산업무 책임자 및 부책임			

	및 인 력		자를 지정·운영하고 관련직원의 윤리서약을 문서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공통 (*)	1.10 품질관리 및 생산업무 담당직원이 충분한 이해와 숙지상태를 유지하도록 분야별·계층별로 교육훈련을 규정화하고 계획 및 실행결과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공통	1.11 시험·검사 및 합격표서관리 등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의 직무기술서 및 직원이력카드 등 자격인증 절차를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공통 (중) (*)	1.12 신제품 평가, 고객 개선요구사항, 부적합 검사결과 개선 등 품질경영시스템 향상을 위한 자체 심의회의 운영 절차를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Ⅱ) (*)	1.13 재직경력 1년 이상으로 관련 교육(정기교육)을 이수한 품질관리 및 생산업무 전담인력을 갖추고 개인별 책임과 권한을 규정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Ⅲ) (*)	1.14 재직경력 3년 이상으로 관련 교육(정기교육)을 이수한 품질관리, 생산 및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갖추고 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2] 설 계 및 개 발	다) 기록 및 문 서관리	공통	1.15 제조공정 및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규격 등 모든 기술문서는 최신본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통 (*)	1.16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에 따라 생성되는 모든 기록(각종대장, 파일, 서류 등) 및 문서(기술문서, 외부출처문서 등)는 식별, 검색, 보관, 폐기 등의 규정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3년 이상의 보존기간을 설정하여 관리대장에 의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가) 설계	공통	2.1 생산에 적용되는 제품의 설계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작성·승인·변경 등의 절차를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통	2.2 공정관리계획서, 작업지침서, 공정별 합격기준 등 제조공정 관련 기록물의 작성·승인·변경 등의 절차를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나) 개발	품질 제품 검사 (Ⅲ) (중)	2.3 제품의 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실증적인 개발 실적이 있어야 한다.			
[3]	가) 구매	공통	3.1 구매품에 대한 합리적인 검수기준을 규정			

구 매 및 생 산			화하여 운영하고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외주 업 체 관리	공통	3.2 제품의 일부를 제조·납품하는 외주업체에 대한 자격 및 품질관리 평가기준, 사후관리 절차를 규정화하고 지정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통 (중)	3.3 품목단위의 제품에는 수입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Ⅱ)	3.4 중요 외주품 및 공급자를 평가하고 평가에 적합한 외주품을 생산에 활용하여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Ⅲ)	3.5 모든 외주품 및 공급자를 평가하고 구매/발주/재고 현황의 전산화 등으로 관리하여 평가에 적합한 외주품을 생산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 제조설 비 및 장 비	공통 (중)	3.6 신청품목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 및 장비를 보유하고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통	3.7 중요 제조설비 및 장비의 사용매뉴얼 및 안전수칙을 작성·비치하여 주기적인 교육 등의 개선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통 (*)	3.8 제조설비 및 장비의 구입, 사용, 점검, 수리, 폐기 등의 절차를 규정화 하고 이력 등의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통	3.9 제조설비 및 장비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표시하고 절차를 규정화 하여 정상가동 상태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의 경우 전문지식을 가진자로 하여금 관리되어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Ⅱ)	3.10 중요 제조설비 및 장비별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을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Ⅲ)	3.11 중요 제조설비 및 장비를 포함하고 해당품목단위의 제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조시설 및 장비별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을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라) 생산	공통 (중)	3.12 생산공정 합리화를 위한 최신본의 공정관리규정(작업지침서, 작업표준, 작업지도서 등) 및 공정별 합격 판정기준을 규정화하여야 한다.			
		공통	3.13 생산설비, 생산품 및 불량품에 대한 식별표시를 명확히 하고 정상제품과 불량제품을 격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공통	3.14 특수성 및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은 경력 및 자격이 부여된 작업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공통	3.15 부속품 및 완성품의 효과적인 보관·보존			

		(*)	· 재고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규정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공통 (중)	3.16 완성품의 생산 및 판매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록은 합격증지 불출현황 또는 철인사용 현황 기록과 일치하여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Ⅱ)	3.17 주요공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정상의 문제점 및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Ⅲ)	3.18 모든 공정별 중간검사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종합공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정상의 문제점 및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자체 검사 체계	가) 검사 방법 및 합 격 수 준 관 리	공통 (중)	4.1 샘플링·검사방법 및 합격수준 등을 규정화하고 자체품질검사시스템을 통해 시험·검사결과 등 증거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통 (중) (*)	4.2 합격제품의 출고를 승인하는 책임자를 선정하여 승인이 확인된 경우에 제품을 출고하여야 한다.			
		공통	4.3 시험·검사제품의 취급·운반·보관 및 부적합·불량제품에 대하여 원인파악 등 처리절차를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통 (중)	4.4 시험·검사자를 지정하여 생산로트마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통 (중)	4.5 형식별로 년 1회 이상 관련 기준의 시험방법에 따라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공통	4.6 시험실별 환경유지를 위한 온도 및 습도 조건을 규정화 하고 시험실 환경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공통	4.7 시험의 일부를 외부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시험기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활용하는 경우의 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화하고 평가등의 선정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Ⅱ)	4.8 중요 제조공정 단계별로 제품적합성 검사절차를 규정화하고, 불량품의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조치 및 품질개선활동의 증거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Ⅲ)	4.9 모든 제조공정 단계별로 제품적합성 검사절차를 규정화하여 운영하고, 불량품의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조치 및 품질개선활동의 증거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나) 검사 설 비 및 장 비	공통 (중)	4.10 교정 및 중간점검 등을 통해 측정의 유효성과 지속적인 장비의 가동·유지·관리상태가 확인되어야 한다.			

[5]	품질 개선 활동	공통	4.11 주요 시험·검사장비의 사용매뉴얼 등 사용기준을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공통 (*)	4.12 기기의 구입, 사용, 점검, 수리, 폐기 등 관리절차를 규정화하고 기기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Ⅱ)	4.13 주요 검사설비 및 장비의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 관리절차를 규정화하고, 운영 등의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Ⅲ)	4.14 주요 검사설비 및 장비를 포함하고 해당품목단위의 제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장비의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 관리절차를 규정화하고 운영 등의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Ⅱ) (*)	4.15 시험·검사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검사설비 및 장비의 확충계획을 수립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Ⅲ) (*)	4.16 시험·검사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검사설비 및 장비의 중장기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1년 이상 실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가) 시정 및 예방조치	공통	5.1 생산공정 및 검사결과의 불량원인 개선과 내부심사, 경영검토 부적합 내용 등의 개선을 위한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를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통	5.2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에는 발견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부적합 사항, 조치요구기한 및 조치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공통	5.3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보고서에는 부적합 원인 분석, 개선결과, 잠재적 원인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통	5.4 년 1회 이상의 정기내부심사를 실시하고, 품목단위 추가 또는 조직의 변동 등 품질경영시스템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특별내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통	5.5 내부심사는 피심사 부서와 독립적인 위치로서 자격을 부여 받은 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나) 내부심사	공통	5.6 내부심사를 위한 계획수립, 실행(심사내용), 결과보고의 방법과 절차는 규정화되어야 하며, 관련 기록은 보존되어야 한다.			
		품질 제품	5.7 품질경영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심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검사 (Ⅱ) (*)	다.			
		품질 제품 검사 (Ⅲ) (*)	5.8 품질경영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심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조직을 갖추어 책임과 권한을 규정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다) 경영 검토	공통 (*)	5.9 경영검토 회의 내용에는 품질방침의 이행, 내부심사결과, 시정 및 예방조치결과, 고객불만사항, 중요작업의 변경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Ⅱ) (*)	5.10 품질경영시스템의 향상을 위한 경영검토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화하고 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경영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Ⅲ) (*)	5.11 품질경영시스템의 향상을 위한 경영검토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화하고 년 2회 이상 대표자가 주관하는 정기적인 경영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6] 합 격 표 시 등 의 관 리	가) 합격 표시	공통 (중)	6.1 합격표시의 관리(수령, 불출, 사용, 보관 및 반납, 오사용, 훼손, 도난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화하고, 대표자가 지정된 직원에 의해 관련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록에서 관리책임자의 서명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통	6.2 합격표시 관리자는 합격표시 부착작업 공정에 입회하여야 하며, 주 1회 이상 합격표시 관리상태를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공통 (*)	6.3 합격표시는 분실 및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2중의 시건장치가 된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외의 불출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나) 품질 안 정성	공통 (중)	6.4 생산중 제품의 결함 또는 A/S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는 기록으로 보존되어 품질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공통	6.5 고객 및 직원의 불만 접수사항에 대한 현황관리, 분석결과, 예방대책 강구, 조치결과 등의 회신 및 추적관리 실적 등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Ⅱ)	6.6 제품별 결함, 제품불량사고 및 부적합품 유통방지를 위한 사안별 조치계획이 규정화되어 관리하여야 한다.		
		품질 제품	6.7 제품별 결함, 제품불량사고 및 부적합품 유통방지를 위한 사안별 조치계획 및 대응			

		검사 (Ⅲ)	매뉴얼이 규정화되어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 품질 및 제품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 심사종류의 「공통」은 품질제품검사(Ⅱ) 및 품질제품검사(Ⅲ)의 공통된 심사항목이고, 「품질제품검사(Ⅱ)」은 품질제품검사(Ⅱ)의 공정심사 항목이며, 「품질제품검사(Ⅲ)」는 품질제품검사(Ⅲ)의 공정심사 항목임. ※ (중)표시의 심사항목은 심사결과 1개 이상의 부적합 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결과는 부적합 처리됨. ※ (*)표시의 심사항목은 이미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신청인이 다른 품목단위의 소방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는 심사항목임. ※ 규칙 제30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품질제품검사(Ⅱ)」과 「공통」에 해당하는 심사항목<신설 2015.1.15.>						